

장학 규정

개정 2018.06.28. 개정 2019.02.25. 개정 2019.04.17. 개정 2019.09.16. 개정 2020.07.16.
 개정 2020.08.26. 전문개정2020.12.22. 개정 2021.05.06. 개정 2021.08.26. 개정 2021.11.04.
 개정 2022.06.27. 개정 2022.09.06. 개정 2022.11.02. 개정 2023.09.21. 개정 2024.02.27.
 개정 2024.12.05. 개정 2025.07.28. 개정2026.03.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08.26.>

제2조 (적용범위)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 ① 장학금 수혜자격으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한다.<개정2024.12.05.>
1. 학업성적 및 품행이 우수한 자.
 2. 학교발전에 공이 있는 자.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직계자녀.
 4.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직계자녀.
 5.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6. 형제, 자매가 재학하고 있는 자.
 7.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개정2021.08.26.>
 8.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개정2021.08.26.>
 9. 기타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신설2021.08.26.>
- 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②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0~9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신설2024.12.05.><개정2025.07.28.>

제2장 장학생의 선정

제4조 (장학생의 배정)

- ① 학생처 학생팀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장학금 지급액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계열 (학과) 장에게 통보한다.<개정2021.08.26., 2022.06.27.>

- ② 1개 계열(학과) 및 계열이 주야간으로 분리 편성되어 있는 과는 별도의 계열(학과) 별로 본다.<2021.08.26.>
- ③ 인원배정은 계열(학과) 및 계열(전공)의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추천)

- ① 장학생을 배정받은 계열(학과)에서는 장학관련 제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 ② 자격기준에 적합한 학생들에 대해 계열(학과)별 전체 전임교원의 확인을 거쳐 해당 부서에 추천서를 제출한다.

제6조 (동점자 사정기준) 성적(전 과목 평점평균)이 동점일 때는 다음 기준 순서에 의거 선정한다.

- ① 전 과목 백분율 상위자
- ② 전공과목 백분위 상위자<개정 2018.06.28.>
- ③ 교양과목 백분위 상위자<개정 2018.06.28.>
- ④ 연장자

제7조 (자격상실) 장학생으로서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학칙을 위반하여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시험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
- ② <삭제 2016.12.08.>
- ③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자퇴를 하는 때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반환 규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단, 장학금을 지급받은 당해 년도에 한함) <개정 2013.06.04.><개정 2016.12.08.>
- ④ 등록한 자가 휴학 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신설 2025.07.28.>
(단, 장학금을 지급 받은 당해 년도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반환 규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 (교외장학금)

교외 장학기관 또는 개인이 장학생을 추천의뢰 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할 경우에는 추천기관 또는 의뢰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9조 (장학생의 확정)

학생처장은 각 계열(학과)에서 추천한 자를 지원자격 및 지급기준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각 계열(학과)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2.06.27.>

제3장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제10조 (장학금의 구분)<개정2021.08.26.>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교내 장학금

가. 성적우수장학금 나. 저소득층장학금 다. 근로장학금 라. 재난장학금
마. 교직원장학금 바. 기타

② 교외 장학금

가. 국가장학금 나. 지방자치단체장학금 다. 사설 및 기타

제11조 (교내장학금의 종류)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요건은 [별표1] 과 같다

제12조 (지급방법)

장학금은 해당학기 납입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3조 (지급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 내에 한 한다. 단, 2013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개정 2013.06.04.>

제14조 (교내장학 초과지급의 제한 및 예외)<조문개정 2019.09.16.>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워크스터디장학금, 국가근로(교내대응), 해외연수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재난지원특별장학금(1), 토익점핑장학금, 외국인유학생장학금(3), 혜전생활장학금, 학과장추천장학금(1), 공로장학금Ⅱ(2),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지역인재생활비장학금, 단곡(방송옥)장학금, 명예총장장학금은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2011.12.7.,2012.07.16.,2014.12.16.,2015.09.01.,2018.06.28.,2019.09.16.,2020.07.16.,2020.08.26.,2020.12.22.,2021.08.26.,2021.11.04.2022.06.27.>

제15조 (기타)

장학사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198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규정은 198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규정은 198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규정은 198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규정은 198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이규정은 198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이규정은 199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이규정은 199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1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2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장학규정 제3조(장학생의 자격) 및 제 9조(장학생의 추천)는 2007년 10월 신청받는 장학금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제1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장학규정 제10조(동점자사정기준), 장학규정 제18조(이증지급의 제한 및 예외), 공로장학금, 혜전장학금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제1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21일 부터 시행 한다. 단, 혜전동문장학금과 총장 특별장학금 3항과 4항, 다문화장학금 25%에서 35%로 인상 지급은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시행일) (2013.6.4.)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시행일) (2013.7.18.)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6.)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단, 총장특별장학금내 2항(국가고시에서 100%합격한 학과 국가고시 응시생 및 근로(B)장학금 지급액 25만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9.01.)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단, 건강장학금은 장학규정 제18조(이중지급의 제한 및 예외) 및 장학금 지급은 2015학년도 2학기까지는 적용한다.

부 칙(2016.12.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8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1조(자격상실) 2항 삭제, 근로B장학금 삭제, 총장특별장학금 4항 삭제건은 2017년 03월 0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5.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5월 06일부터 적용한다.

단,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요건표 중 혜전드림장학금,학과장추천장학금,향토지역인재장학금,면접위주전형장학금,교육협력고장학금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단, 만학도장학금은 2022년 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1.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4일부터 적용한다.
단, 지역인재생활비장학금, 성인학습자장학금은 2022년 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단, 외국인유학생장학금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신입생장학금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9.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2.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0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0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7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0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요건표

<개정 2012.07.16., 2013.06.04., 2013.7.18., 2014.12.16., 2015.09.01., 2016.12.08., 2019.02.25., 2019.09.16., 2020.07.16., 2020.08.26., 2020.12.22., 2021.02.22., 2021.05.06., 2021.08.26., 2021.11.04., 2022.06.27., 2022.09.06., 2022.11.02. 2023.09.21. 2024.02.27. 2024.12.05. 2025.07.28. 2026.03.26.>

장학금 종 류	지 급 대 상	지급액	지급 구분	지급 기간
이사장 장학금	1. 수시, 정시모집 입학자 중 고교 졸업자에 한하여 입학성적이 1위 인 자. (3학년 1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예체능 과목 제외) ※ 선발기준(학기기준일): 25세미만, 25세이상 각 1명	등록금전액	등록금	해당학기 (1회)
총 장 장학금	1. 수시, 정시모집 입학자중 고교 졸업자에 한하여 입학성적이 2위인 자. (3학년 1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예체능 과목 제외) ※ 선발기준(학기기준일): 25세미만, 25세이상 각 1명	등록금전액	등록금	해당학기 (1회)
수 석 장학금	1. 직전학기성적이 계열(학과)에서 가장 우수한 자. 가. 계열(학과)에서 수석장학생이 이사장, 총장 장학생일 경우 상위 장학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석장학금은 공식으로 한다. 나. 전과 학생은 수석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휴학직전학기 장학대상자는 복학시 지급한다.	등록금 전액	등록금	해당학기
우수 A 장학금	1. 직전학기성적이 계열(학과,전공)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우수 A 장학 생으로 선정된 자. 가. 전과 학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휴학직전학기 장학대상자는 복학시 지급한다.	등록금의 50%	등록금	해당학기
우수 B 장학금	1. 직전학기성적이 계열(학과,전공)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우수 B 장학 생으로 선정된 자. 가. 전과 학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휴학직전학기 장학대상자는 복학시 지급한다. 다. 재학생수가 8명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50만원	등록금	해당학기
입 학 성 적 우 수 장학금	1.정시모집에 한하여 수능점수 3등급 이상 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최우수 1개 과목) 평균점수 반영 나. 전체 학과 대상 다. 재학 중 매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0이상일 경우 계속지원 (단, 평점평균 4.0미만 시점부터 해당장학금 소멸로 지급중단) 라. 삭제 마. 타 장학금(이사장, 총장장학금 등)과 중복수혜 시 다음학기부터 해당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1) 간호학과는 모집정원의 10%를 넘지 못하며, 호텔조리계열, 제과제빵과는 모집정원의 5%를 넘을 수 없음 2) 삭제	등록금전액	등록금	2년제- 4개학기, 3년제- 6개학기, 4년제- 8개 학기
영 어 능 력 우 수 장학금	1. TOEIC, TOEFL, IELTS, TEPS 성적우수자이거나 영어수능 등급이 우 수한자로 입학한 자 가. TOEIC : 700점 이상 나. TOEFL : 525(PBT)점, 200(CBT)점, 70(IBT) 이상 다. IELTS : 6.5 이상 라. TEPS : 575점 이상 마. 영어수능등급 : 1등급 1)모든 전형에 해당되며 내국인에 한함.(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2)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 시 우선 선발하며,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원(단, 재학기간이내 어학연수에 결격사 유가 없는 자에 한함) 3)재학 중 매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0이상일 경우 계속지급(단, 4.0미 만부터 해당 장학금 소멸) 4)삭제	등록금전액	등록금	2년제- 4개학기, 3년제- 6개학기, 4년제- 8개 학기

장학금 종 류	지 급 대 상	지급액	지급 구분	지급 기간										
	<p>5) 해당 성적표는 입학일 기준 성적표의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학중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당 성적표를 다시 제출하여야 장학금을 계속 지원(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장학금 소멸로 지급 중단)</p> <p>6) 타 장학금과 중복될 경우 상위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성적우수장학금(이사장, 총장, 수석)과 중복될 경우 해당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후 본 장학금의 수혜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p> <p>7) 외국고등학교 졸업생이거나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들은 아래점수로 한다.(해당성적표는 성적표의 유효기간 내에 포함·입학일 기준)</p> <p>① TOEIC : 850점 이상 ② TOEFL : 590(PBT)점, 243(CBT)점, 102(IBT) 이상 ③ IELTS : 7.5 이상 ④ TEPS : 850점 이상</p>													
토익점핑 장학금	<p>1. 국내 고교졸업자로 재학생 중 TOEIC 성적이 신청점수 (60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점핑점수를 도달한 자. <신청가능점수 및 점핑점수에 따른 지급액></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점핑</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100 ↑</td> <td>1,000,000원</td> </tr> <tr> <td>80 ↑</td> <td>800,000원</td> </tr> <tr> <td>50 ↑</td> <td>500,000원</td> </tr> <tr> <td>신청점수</td> <td>600점 이상</td> </tr> </tbody> </table> <p>2. 장학금 신청 가. 1항의 해당자는 재학중 TOEIC 성적 유효기간 내 성적표와 장학금 신청서를 해당부서에 제출, 점핑점수별 장학금지급. 나. 장학금은 연 1회 신청 가능 다. 연도별 예산금액대비 초과 지급시에는 고 점핑점수 순으로 지급가능하며 점핑점수 동점시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지급.</p> <p>3. 신청제외자 가. 영어능력우수장학금 기수혜자 나. 신청학기 외 잔여학기가 1개 학기 미만인 자</p>	점핑	지급액	100 ↑	1,000,000원	80 ↑	800,000원	50 ↑	500,000원	신청점수	600점 이상	점핑점수 지급액 참조	생활비	연 1회
점핑	지급액													
100 ↑	1,000,000원													
80 ↑	800,000원													
50 ↑	500,000원													
신청점수	600점 이상													
공로 I 장학금	<p>1. 학생회 간부로 임명된 자 중 각 부서장 이상, 대의원 간사 2. 해전방송국 임원으로 임명된 자중 국원 이상 (단, 1항, 2항은 직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점 이상인 자)</p>	<p>*학생회장, 대의원의장, -(등록금 전액)</p> <p>*부학생회장, 대의원부의장, -(등록금의 65%)</p> <p>*총학생회각부서장, 대의원간사(등록금 의 35%)</p> <p>*방송국 실장(등록금의 65%) 부실장(등록금의 30%) 국원 -200,000원</p>	등록금	해당학기										
공로 II 장학금	<p>1. 각기구의 임원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로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계열(학과) 최고학년 과대표 중 총장이 인정 하는 자 (단, 간호학과는 3학년도 인정) 3. 기타 학교발전에 기여하여 총장이 인정한 자 (단, 1항, 2항, 3항은 직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점 이상인 자)</p>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1,3-등록금 2-생활비	해당학기										

장학금 종 류	지 급 대 상	지급액	지급 구분	지급 기간
목 련 장학금	1. 단위 가정에서 본교에 3인 이상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자 중 2명 지급 2. 단위 가정에서 본교에 2인이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자 중 1명 지급	등록금의 50%	등록금	해당학기
혜전동문 장학금	1. 본교 동문 본인 및 직계존속, 비속인 자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 신입생 제외)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등록금	해당학기
다문화 장학금	1. 다문화가족으로 본교에 입학한 자.	등록금의 35%	등록금	해당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1. 국적이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이수한 후 본교에 입학 한 자이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유학생 (단, 자매대학과 협정에 따르며, 기타 총장이 인정 할 경우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TOPIK 점평장학금 가. 입학 시 TOPIK 3급 이상 자 장학금 지급 나. 재학 중 TOPIK 시험 등급이 상위등급으로 점평할 때 마다 장학금 지급 (단, 3급이상일 경우 해당) 3.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수료자장학금 가. 우리 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수료자 중 본교에 입학한 자 (1회에 한함) 4. 외국인 유학생은 총장특별장학금, 워크스터디장학금, 공로II 장학금(2항)을 제외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50만원 50만원 20만원	1.등록금 2.생활비 3.생활비	해당학기
교직원 장학금	1. 혜전학원 교직원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신입생제외)	등록금전액	등록금	해당학기
	2. 혜전학원 교직원 배우자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신입생제외)	등록금의 65%		
	3. 혜전학원 교직원 본인이 본교에 재학 중인 자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신입생제외)	등록금의 40%		
혜전생활 장학금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생활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학업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 가. 생활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계열(학과) 전임교원 전원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생활비	해당학기
혜 전 장학금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학업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 가.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계열(학과) 전임교원 전원의 추천을 받은 자. 나. 근면성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계열(학과) 전임교원 전원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	
성인학습자 장학금	1.연령이 만35세 이상인 재학생(기준 3.1일, 9.1일) ※2026학년도 신입생 적용(전공심화과정제외)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등록금	해당학기
총장특별 장학금	1. 국가고시 전국 수석한 학생. 2. 교내외 각종 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생활비	해당기간
전공심화 과정 장학금	1. 전공심화과정으로 본교에 입학한 자. (단, 성적우수 장학금은 2학기부터 적용, 외국인유학생은 첫 학기부터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2026.03.26.>	2학기부터- 등록금의 20%	등록금	해당학기

장학금 종 류	지 급 대 상	지급액	지급 구분	지급 기간
혜 전 드 립 장학금	1. 신입생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며 국가장학금 선발자중에서 선정한다. 가. 1급: 국가장학금 선발자중 기초생활 수급자 나. 2급: 소년·소녀 가정 다. 3급: 본인이 장애등급을 가진 자 라. 4급: 국가장학금 선발자중 차상위계층 자녀 마. 5급: 국가장학금 선발자중 학자금지원소득구간 1구간~8구간 이내 인 자	1급~5급 : 등록금전액	등록금	해당학기
	2. 재학생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며 국가장학금 선발자중에서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장애인 학생은 성적제한 없이 지원함) 가. 1급: 국가장학금 선발자중 기초생활 수급자 나. 2급: 소년·소녀 가정 다. 3급: 본인이 장애등급을 가진 자 라. 4급: 국가장학금 선발자중 차상위계층 자녀 마. 5급: 국가장학금 선발자중 학자금지원소득구간 1구간~4구간 이내인 자 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②의 30% 이상이 안될 경우 예산 범위 내 소득구간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음	가 ~ 마 항 : 등록금전액 바 항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해당학기
학과장 추천장학금	1. 신입생 중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생활비	해당학기 (1회)
지역인재 생활비장 학금	1. 충남·세종대전·충북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신입생 (검정고시 졸업자 포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생활비	해당학기 (1회)
향토지역 인재장학금	1. 본교 입학생으로 충남·세종대전·충북지역 고등학교를 졸업 한 자 (단,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졸업자 포함) -3년이내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등록금	해당학기 (1회)
혜전홍성 장학금	1. 홍성군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등록금	입학학기 (1회)
면접특별 전형 장학금	1. 면접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삭제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등록금	해당학기 (1회)
교육협력고 장학금	1. 본교와 협약고등학교에서 입학한 자 2. 충남·세종대전·충북지역 협약고등학교 제외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등록금	해당학기 (1회)
학원추천 장학금	신입생 중 전공관련(호텔조리계열, 외식창업조리과, 제과제빵과) 학 원 이수자로 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우리대학교와 협약된 학원에 한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등록금	해당학기 (1회)
마일리지 장학금	1.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4대핵심역량의 이력사항이 우수한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생활비	연1회
해외연수 장학금	1. 본교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계열(학과)장 및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생활비	해당기간
워 크 스터디 장학금	1. 근면성실하고 가정사정이 곤란한자 중 지정된 부서에 서 근무하는 자. 2. 근무부서는 매학기 초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생활비	매월지급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1. 장애학생의 도우미 학생 2. 장애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위원회에 서 별도로 정함	생활비	매월지급

장학금 종 류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급 구분	지급 기간
재난지원 특별장학금	【재난지원특별장학금 1-생활비지원】 1. 국가 및 지자체, 대학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인정된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생활비	해당학기
	【재난지원특별장학금 2】 1. 국가 및 지자체, 대학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정된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등록금 납부금액의 일부를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등록금	
산업체 위탁장학금	1. 본대학과 산업체위탁 협약을 맺은 부대에 소속된 장기 근속 군인으로 산업체 위탁생으로 본교에 입학한자.	등록금액의 40%	등록금	해당학기
	1. 산업체 위탁생으로 본교에 입학한자. 가. 산업체위탁 교육생은 교육부별도 학급인가를 받을 경우 1개 학급으로 인정하여 장학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학급인원은 20인이상이어야 한다. [단, 입학 시 장학금 적용을 하지 않으며 (성적 장학금은 2학기부터 적용-우수장학금 지급)]	등록금액의 20%		
보 훈 장학금	1. 보훈장학금 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처에서 정한 성적 70점 이상인자)	등록금 전액	등록금	해당학기
통일부 장학금	1.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 남북하나재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남북하나재단, 한국장학재단,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03.26.>	등록금 전액	등록금	해당학기
단 곡 (방승옥) 장학금	1.홍성군내 고등학교 졸업 후 본교 재학자로 홍성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금수입 이자 범위 내	생활비	연1회
명예총장 장학금	1.근면성실하고 학구열이 투철하여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간호학과,호텔조리계열,제과제빵(학)과 해당)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생활비	연1회
국가근로장학금 (교내대응)	1.국가근로 선발자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 시행	생활비	근로기간
총장배 경진대회 장학금	1. 본대학 주최 총장배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고교생이 주 관학과에 입학시 학습지원 장학금 지급	1.수상장학금 -대상:등록금전액 -금상:200만원 -은상:100만원 -동상:50만원	등록금	입학학기 (1회)
성인학습자전담 학과장학금	1. 성인학습자 전담학과로 입학한 자 가. 대상학과: 파크골프지도과 <신설2026.03.26.>	50만원	등록금	매학기
교 외 장학금	1. 기탁 기관 및 단체의 선발규정에 의거 추천을 받은 자 2. 계열(학과) 수혜자를 지정 기탁했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시행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의 특성에 따라 선발된 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장학금(RISE사업)은 별도 장학 지침 적용 (단, 충남형 계약학과 장학금은 총장특별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워크스터디장학금을 제외한 생활비성 장학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성 장학금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장학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총장특별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워크스터디장학금을 제외한 생활비성 장학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5. 혁신지원사업 장학금은 별도 장학 지침 적용			

- 본 장학금은 예산 편성 운영에 따라 학기별, 구간별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범위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될 경우 상위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성인학습자장학금, 향토지역인재장학금, 면접특별전형장학금, 교육협력고장학금, 학원추천장학금은 서로 중복지급 불가